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31일, 포항시장
2)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3) 상정일자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상수 문화예술과장)

1) 개정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(시립예술단 채용·운영 공공성 제고, 운영 및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마련)을 반영하여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가. 예술단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명확성 확보(안 제3조~안 제3조의2)
나. 예술단 간부단원 선발 공개전형 규정 신설(안 제6조)
다. 포항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9조)
라. 단원 선발과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10조)
마. 입장료 감면 징수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 정의에 대한 개정(안 제16조)

3) 관계법령

❍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❍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❍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경희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예술단 간부단원에 대해 공개전형으로 모집토록 하고,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개전형시 위원의 사적이해 관련사항 발생시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을 명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,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다만,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준수, 단원간 불화로 인한 내부운영문제 등에 대해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❍ 포항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 등 공개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시민들이 지역문화와 연계된 예술문화활동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